

시설별, 축종별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



I. 사료공장	1
II. 도축장	4
III. 집유장	8
IV.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	10
V. AI 센터	12
VI. 가축시장	13

시설별·축종별 구제역 차단방역 절차

철저한 **차단방역**과 주기적인 **소독**실시로
구제역을 **예방**할 수 있습니다.



1 출입구 통제



2 출입차량 외부 소독



3 출입차량 내부 소독



4 개인 소독 철저(특히 손·발 소독)



5 출입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
운행전 GPS 작동 확인



6 “소독실시기록부” 작성



7 공장·시장 내·외부 소독



8 축산시설 출입자 전용신발·
위생복 착용



9 개인방역덧신 착용



I 사료공장

- 1 사료공장 종사자는 구제역·AI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·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 - 2 사료공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구제역 방역 관련 자체교육 실시 (분기별)
 - 3 사료공장 소유자 및 사료운반차량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 (매일)
 -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(미작동)시 출입금지 조치 및 관할 시·군에 통보
- ※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규정
-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, 해당 차량 운전자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4 사료공장을 출입하는 사료운반차량에 대하여는 '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' (2페이지)에 따라 관리





사료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

단 계	소독관리 요령	
공장 입차	차량	① 공장 출입 시 고압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 제거 ②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
	개인	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 실시
공장 출차	차량	차량 내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의 소독약 충전상태 점검
	개인	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“소독실시대장” 에 소독 실시 후 기록 및 “소독필증” 발급
농장 도착	차량 · 개인	① 농장 출입 전 비닐장갑, 마스크, 방역복,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
농장 출발	차량 · 개인	①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,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사용한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에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휴대용 소독기로 손·의복·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 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차량 전체를 소독

준수 사항

-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, 오염시 담당자로부터 즉시 새 방역용품을 지급 받음
- 농장 내에서는 가급적 농장관리자와 접촉하지 않음
- 긴급상황 발생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(반경 3km)내 운행을 금지하며,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에 부득이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음

사료공장 · 사료차량 소독



| 공장출입소독



| 차량 외부 소독



| 차량 외부 2차소독



| 차량 외부 2차소독



| 개인방역덧신



| 개인방역덧신



| 차량 내부 소독



| 차량 내부 소독



| 공장 내부 소독



| 공장 내부 소독



| 공장 내부 소독



| 공장 내부 소독



II 도축장

- 1 도축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 - 2 도축장 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구제역 방역 관련 자체교육·홍보 실시
 - 3 도축장 소유자 및 차량 운전자는 축산차량 등록사항 및 GPS 정상작동 여부 점검
 -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설치(미작동)시 출입금지 조치 및 관할 시·군에 통보
- ※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 처벌규정
-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, 해당 차량 운전자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4 가축 운반차량 관리
 - 가축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 허용
 - 차량번호, 출입시간, 경유농장 등 기록 확인
 - 검사관(검사원 포함)은 하차 전 차량소독 확인 및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하고, 우제류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
 - 계류 중인 우제류의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도축을 중지하고 관할 시·도에 정밀검사 요청
 - 하차 즉시 차량을 세척·소독(바닥·하체·바퀴 등 차량 전체)하되, 검역본부 권장 소독약으로 소독 실시

가축 운반차량 세척·소독 실시 요령

- ①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차량 외부 (특히, 흙반이·차량바퀴 등) 세척 실시
- ②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서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독 실시
- ③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
- ④ 운전자 및 동승자는 분무소독 또는 출입자소독기에서 소독
- ⑤ 소독 실시 후 차량 운전자는 소독실시기록부에 소독상황 기록·관리

5 일반 출입차량 관리

-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후 출입 허용
-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, 운전자성명,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
-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·소독
-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인원만 출입토록 통제
-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(특히, 손·신발 소독)



| 차량 외부 소독



| 차량 내부 소독



6 도축장·도축시설 주변소독

- 작업 전·후 도축장,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
-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
- 도축 부산물, 퇴비(액비)는 매일 소독 실시
-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되 차량의 오염된 유기물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며, 출발 전 운전자 및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도 반드시 실시

7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‘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’에 따라 관리



| 도축시설 주변 소독



|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



| 도축장 내부 소독



| 도축장 외부 소독

가축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

단 계	소독관리 요령	
업체 도축장 입차	차량	① 도축장 출입 시 고압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②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
	사람	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하고, 발판 소독조에 신발을 2~3초간 소독
업체 도축장 출차	차량	①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도축장 내의 세척장에서 고압세척하여 분변 등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분무소독 실시 ② 출고차량은 세차실 입구에 정차한 후 소독기로 운전석 및 문,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 ③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 점검
	사람	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“소독실시대장”에 소독 실시 후 기록 및 “소독필증” 발급
농장 도착	차량 · 사람	① 농장 출입 전 비닐장갑, 마스크, 방역복,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
농장 출발	차량 · 사람	①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,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에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휴대용 소독기로 손·의복·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 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차량 전체를 소독

준수 사항

-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, 오염시 담당자로부터 즉시 재 지급 받음
- 농장 내에서는 가급적 농장관리자와 접촉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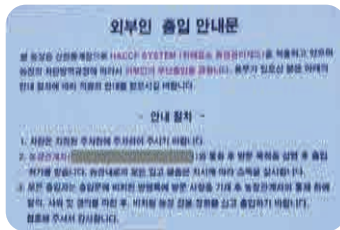


Ⅲ 집유장

- 1 집유장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- 2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 통제
 - ① 모든 출입자·차량의 방문 기록은 일지형태로 작성 유지
(방문일시, 방문 목적, 방문전 경유지, 방문후 행선지, 연락처 등 명기)
 - ②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
-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
 - ③ 출입구, 창문, 하수구, 배수구 등에 방서·방충시설 설치



1 ① 외부인 방문 및 소독 기록



1 ① 외부인 출입 안내문



1 ② 출입구 통제

3 집유장 내 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소독

- ① 외부로부터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집유장 내·외부 전용신발·의복을 착용
- ② 차량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차량 및 발판 소독조 관리
 - 바퀴뿐만 아니라 차량 내·외부 세척 소독 철저
 -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설치

※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~3일 마다 교환하고 소독조 내 오물 수시 제거

- ③ 사용물품 소독
- ④ 집유장 종사자 외출 및 귀가 시 반드시 손발 세척



① 환복



① 전용신발 교체



①, ② 위생복 착용



④ 손소독



차량 외부 소독



차량 내부 소독

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 준수

-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
-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에 사용을 금지하고, 눈·피부에 접촉 금지
- 포르말린제제는 사람·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



IV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

- 1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- 2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 소유주는 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·홍보
- 3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및 소독준수사항 이행
- 4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·장화·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
 - 농장 출입 시 방역조치사항 이행 및 출입기록부 기록 철저
- 5 축산차량등록제 이행(GPS 장착 및 운영) 철저
- 6 운영자는 농가출입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'소독실시기록부' 기록관리
- 7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
- 8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를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아래의 '가축분뇨운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'(11페이지 참조)에 따라 관리



| 차량 외부 소독



| 운전자 대인 소독



| 출입기록부 작성



| 공장내부 소독

가축분뇨반차량 방역 소독관리요령

단 계	소독관리 요령	
공장 입차	차량	① 가축분뇨 비료생산공장 출입 시 고압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 제거 ②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
	개인	대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 실시
공장 출차	차량	차량 내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의 소독약 충전상태 점검
	개인	①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, 장갑 비치 상태 확인 ②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“소독실시대장”에 소독 실시 후 기록
농장 도착	차량 · 개인	① 농장 출입 전 비닐장갑, 마스크, 방역복, 비닐장화 착용 ②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 실시 ③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 실시
	차량 · 개인	①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,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내에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 ② 농장 출발 시 농장 입구에서 휴대용 소독기로 손·의복·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차량 전체를 소독

준수 사항

-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, 오염시 담당자로부터 즉시 새 방역용품을 지급 받음
- 농장 내에서는 가급적 농장관리자와 접촉하지 않음
- 긴급상황 발생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(반경 3km)내 운행을 금지하며,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에 부득이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음



V AI 센터

- 1 AI 센터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 자제, 해외여행시 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·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
- 2 AI 센터 소유주는 소속 직원 등에게 축산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정기 교육·홍보
- 3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 준수사항 이행
- 4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·장화·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
 - 농장 출입 시 방역조치사항 이행 및 출입기록부 기록 철저
- 5 축산차량등록제 이행(GPS 장착 및 운영) 철저
- 6 AI 센터 운영자는 농가출입 차량 소독을 실시한 후 '소독실시기록부' 기록관리
- 7 정부 및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

AI 센터 방역 소독 관리요령

- 1 입식돈은 최소 30일 이상 격리
 - AI 센터는 구입된 웅돈을 검사하고 훈련시키기 좋도록 격리사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격리사를 관리하는 직원은 따로 있어야 한다. 즉 격리사 직원은 웅돈 사육돈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.
- 2 AI 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료·물·희석액·소모품 등은 관리수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
 - 주위에 헨스를 설치하여 차량이 농장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.
 - 방문자를 최소화하여 질병 유입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.
 - 작업자나 방문객은 샤워를 하고 농장 내로 들어가야 한다.
 - 약속되지 않은 방문은 금지하며 방문객이 사전에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기록해 둔다.
 - 만약 원정액 채취자가 실험실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신발·의복을 교체하고 손을 씻어 실험실 오염을 피해야 한다.

VI 가축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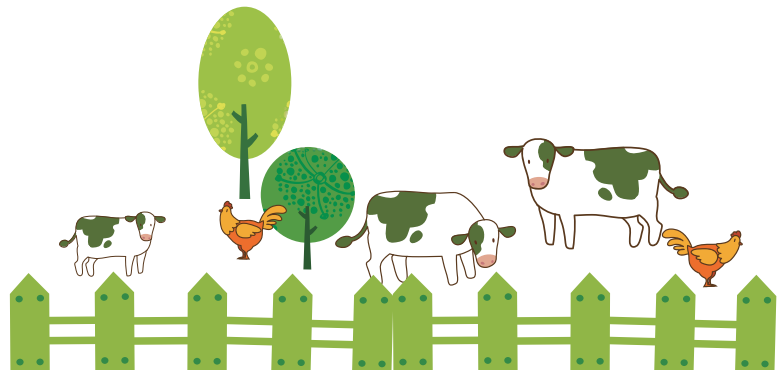
- 1 가축시장 출입구에 차량·사람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상태 점검하여야 함
- 출입자는 대인소독기로 소독을 실시 하며, 가축 운송차량은 차량소독기로 소독한다.
- 2 가축시장 내·외부는 주기적 소독실시
- 3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록유지
- 4 출입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 이행(GPS 장착 및 운영) 철저
- 5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가축에 한해 거래되도록 관리 철저



| 우시장



| 우시장 입구



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
가축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고처

1588-9060 / 1588-4060


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

농림축산검역본부
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